

## 새로운 저독성농약 40개 품목 심의의결

신규품목중 원예용농약도 어독성 등급별 취급제한기준 설정

- ◇ 62품목은 적용병해충 및 잡초추가
- ◇ 안전사용기준 설정(53품목) 및 변경(9품목)
- ◇ 농약명(9품목), 품목명 및 유효성분명(2품목) 변경
- ◇ 베나솔입제=벼흰잎마름병, 델타린프로펜유제=사과굴나방 삭제
- ◇ 타로닐원제 HCB함량 0.05% 이하로 규제
- ◇ 장기미등록·미생산약제등 10품목은 폐지키로

농림수산부는 3월 11일 제20차 농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자 소독약 리프졸유제등 40개 품목을 올해 선보일 신규 약제로 심의, 의결했다. 또 벌구약 피리다비유제등 62품목에 대해서는 적용 병해충 및 잡초를 추가하고 도열병약 아이비분제등 10품목은 폐지키로 했다.

이에 따라 신규약제와 기고시약제중 적용대상이 추가된 작물에

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새로 설정하고(추가설정: 10품목 10작물, 잠정설정: 43품목 47작물) 기고시된 안전사용기준중 일부를 변경(9품목 10작물)했다.

이날 의결된 신규품목을 약종별로 보면 ▲ 살균제=16 ▲ 살충제=14 ▲ 제초제=9 ▲ 성장조정제=1품목이다. 폐지된 품목은 ▲ 장기미등록=4 ▲ 장기미생산=3 ▲ 약효저조=1품목 및 동일성분제

형으로 함량을 달리 신규고시함으로써 폐지된 2품목등 모두 10품목이다. 이중 그로빈분제, 바리신액제, 메나벤설립제 3품목은 재고농약의 약효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나머지 7품목은 즉시폐지기로 했다.

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원제중 '타로닐' 원제의 유해성분인 HCB (헥사코나졸벤젠)의 함량을 0.05% 이하로 규제하여 매수입시마다 이에 대한 함량보증서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제출토록 했다.

또 신규고시품목중 원예용 농약도 수도용 농약과 마찬가지로 어독성 등급별로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했다. 이에 따라 뿌리마름병약 후루아지남분제등 원예용 약제 10품목은 어독성I급으로, 종자소독

약 리프졸유제등 수도용 약제 6품목과 흑지병약 토로스분제등 원예용 약제 6품목은 어독성II급 농약으로 지정됐다.

이 밖에 도열병약 베나솔입제와 굴나방약 텔타린·프로펜유제의 적용대상중 벼·흰잎마름병과 사과·사과굴나방이 각각 삭제됐다. 또 할로스린유제등 9품목은 농약명이, 발잡초약 디메타존유제등 2품목은 품목명 및 유효성분명이 각각 변경됐다. 멸구약 부로피수화제와 과원잡초약 크로닐입제는 제조처방이 변경됐고 반점세균병약 가스란수화제는 유효성분 함유량을 정정했다.

이같은 제20차 농약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2-15호로 3월 23일 고시됐다. (고시내용 94p 참조)

국내고시 농약의 약종별 품목수('92.3.23 현재)

구	분	벼농사용	원예용	합계
살	균제	57	122	179
살	충제	45	139	184
살	균·충제	8	5	13
제	초제	49	51	100
생	장조정제			19
기	타			6
합	계			501